이 보도자료는 2020. 4. 8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수원지방검찰청
평택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락현
전화 031-8053-4308 / 팩스 031-8053-4655

보 도 자 료
2020. 4. 8.(수)

제 목	코로나19 감염 빙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범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. 4. 8.(수)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속 근무처에 '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다녀왔다'고 거짓말하여 이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위계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1 피고인

○ A○○(20세, 사회복무요원)

2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'20. 2. 24.경 '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가 교회 여러 곳에 다녀왔다'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무실을 폐쇄한 후 방역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 **[업무방해]**

3 수사경과

○ '20. 3. 4. 고소장 접수 → 평택서 수사지휘

○ '20. 3. 24. 불구속 송치

○ '20. 4. 8. 피의자 조사 후 불구속 기소

4 참고사항

○ 본건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엄정 대응하였고,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임 ▨